

소위	생	수행	규정
			110

규정번호	W-1.1.5	제정일	2013년 02월 15일
승인책임자	병원장	최근개정일	2016년 10월 31일
검토책임자	규정관리위원회위원장	시행일	2016년 12월 01일
주무부서	간호부	검토주기	3년
관련근거	의료기관인증기준1.1.5	검토예정일	2019년 10월 30일

#### |. 목적

의료기관 내에서 미생물의 주된 전파 원인이 되는 손을 통한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위생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.

#### Ⅱ. 정의

- 1. 손씻기(Hand washing) : 물과 (항균제제)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 것이다.
- 2. 손소독 마찰(Hand rub)
- 알코올 등의 소독제가 함유된 제품으로 물 없이 손을 문질러 소독하는 것이다. 3. 외과적 손위생 (Surgical hand hygiene)
- 상재균을 감소시키고 일시적 오염균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 전에 살균효과 지속성이 있는 소독제로 손을 씻거나(hand scrub), 손을 마찰(hand rub)하여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손위생 (Hand hygiene)

손씻기, 손소독 마찰, 외과적 손위생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. 물과(항균제제) 비누로 손을 씻거나 물 없이 손소독제를 문질러 사용함으로써 미생물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다.

#### Ⅲ. 정책

- 1. 병원 내 모든 직원은 손위생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에 올바른 손위생을 수행한다.
- 2. 손위생 수행을 위한 자원을 지원한다.
- 3. 손위생 증진활동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.
- 4. 손위생 증진활동 성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.

## Ⅳ. 절차

1. 손위생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(WHO Guideline 2009)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위생을 반드시 실시하며, 손위생은 행위 바로 직전 또는 바로 직후에 실시하여야 한다. 손위생은 장갑 착용과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.

- 1) 환자 접촉 전
- 2) 청결/무균 처치 전
  - (1) 청결술 전 : 식사, 경구투약, 구강간호, 회음부 간호, 흡인 등
  - (2) 멸균술 전: 정맥천자, 카테터 삽입, 흉관 배액관의 개방, 검체 채취, 상처 드레싱 등
  - (3) 혈액 및 체액에 노출 위험 후



- ① 검체 채취 후
- ② 배설물이나 토물을 다룬 후
- ③ 호흡기 분비물 접촉 후
- ④ 배액 관련 행위 후
- ⑤ 폐기물 처리 후
- ⑥ 오염물품을 다룬 후
- (4) 환자 접촉 후
- (5)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
- 2. 올바른 손위생 수행 방법
  - 1) 일반적 손위생
    - (1) 손씻기(Hand washing) (CDC Guideline 2002)
      - ① 물과 비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40~60초 동안 손 위생을 시행하며 그 중 rubbing time 은 30초 이상이어야 함. 비누와 물로 손 마찰을 15초간 수행하면 약 90%, 30초간 손 마찰을 수행하면 99% 의 세균제거 효과가 있다.
      - ② 물로 손을 적신 후 (항균제제)비누를 사용하여 손과 손가락을 잘 마찰한다. 손을 흐르는 물로 헹군 후 종이 타올로 완전히 건조시키고 사용한 종이 타올로 수도꼭지를 잠근다.
    - (2) 일상적인 손위생은 hand rub제제를 사용하며,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물과 (항균제) 비누를 사용하여 손씻기를 수행한다.
      - ①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묻은 경우
      - ②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오염이 눈에 보이는 경우
      - ③ 아포를 생성하는 세균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거나 이러한 미생물에 의한 유행 발생 시 (예; Clostridium difficile, Bacillus anthracis 등)
      - ④ 화장실을 이용한 후



(3) 손소독 마찰(Hand rub) (CDC Guideline 2002)(20초 이상 마를때까지)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없다면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위생 시 손이 마른 상태에서 손소독제를 모든 표면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적용하여 손바닥에 따른 후 손이 마를 때까지 손과 손가락 전체 표면을 문지른다.





- 2) 외과적 손위생(Surgical hand hygiene)(3분~6분)
  - 손에 착용한 모든 장신구(반지, 손목시계, 팔찌)를 제거하고 인공 손톱은 금지한다.
  - (1) Surgical Hand Scrubbing(브러시를 사용하는 손위생 방법)
    - ① 손 위생 범위는 손, 전완부, 팔꿈치와 팔꿈치 위 5cm 이다.
    - ② 손 위생 시간은 첫 손 소독 시 5분 이상이며, 다음 손 위생 시 2분 이상으로 시행한다.
    - ③ 손과 팔을 물로 적신 후 소독 액 거품으로 손과 팔꿈치 위 상박 5cm까지 닦고 흐르는 물로 헹군다.
    - ④ 소독 솔을 꺼내 소독 액을 묻혀서 손가락 사이사이, 손바닥, 손톱 밑, 손등, 손목, 전박, 팔꿈치를 순서대로 충분히 스크럽 한다.
    - ⑤ 같은 방법으로 반대 측 손과 팔을 닦는다.
    - ⑥ 한 팔씩 손끝에서 팔꿈치 쪽으로 헹구고 손은 팔꿈치 보다 더 높게 위치시키고 두 손을 마주 잡지 않으며 수술복에 닿지 않도록 한다. 수술실로 들어가서 멸균 수건을 사용하여 손을 먼저 닦은 후 팔꿈치 쪽으로 물기를 닦아 완전히 건조시킨다.



- 3) 장갑 사용 시 손위생
  - (1) 장갑을 사용하더라도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에는 손위생을 수행한다. (장갑사용이 손위생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).



- (2) 혈액이나 체액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점막 또는 손상이 있는 피부와 접촉이 가능할 경우 장갑을 착용한다.
- (3) 장갑 사용 시 사용 직후에 바로 벗고, 매 환자마다 장갑을 교환한다.
- (4) 동일한 환자에서 오염된 부위로부터 다른 부위(손상된 피부, 점막, 의료기구 포함)를 접촉할 경우 장갑을 교환하거나 벗어야 한다.
- (5) 장갑은 재사용하지 않는다.
- 4) 수술(시술)전 손 위생 전 일반적 주의사항
  - (1) 수술 전 손소독은 수술이나 침습적 시술과 같이 무균처치가 필요할 경우 수행한다.
  - (2) 수술장에 출입하기 전이나 손이 눈에 띄게 오염되었으면, 수술 전 손소독 전 에 일반 비누와 물로 먼저 씻는다.
  - (3) 손소독 전에 반지, 팔찌, 손목시계를 제거한다.
  - (4) 마스크, 모자를 착용한 후에 손소독을 진행한다.
  - (5) 손톱은 짧게 유지하며 인조 손톱이나 매니큐어는 하지 않는다.
  - (6) 손을 씻을 때 손톱 밑을 유의하여 닦는다. 솔은 피부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으며, 만일 사용한다면 멸균하여 사용한다.
  - (7) 수술 전 손소독 시에는 손과 전박을 제조업체가 권장한 시간만큼 문지르며 일반적으로 2-5분을 권장한다.
  - (8) 싱크는 물이 튈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넓이와 깊이를 적절하게 설계한다.
  - (9) 수술종료 후 장갑을 벗은 다음 바로 물과 비누로 씻거나 손소독제로 닦는다. 미세한 장갑의 손상 등으로 손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.
- 5) 손위생을 위한 자원 지원
  - (1) 세면대 설치기준
    - ①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위생을 시행할 수 있는 세면대 설치와 함께 물 없이 사용하는 손소득제도 비치한다.
    - ② 필요한 수량과 위치는 손위생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장소 및 사용자의 특성 등을 근거로 파악한다.
    - ③ 의료진, 환자, 조리에 참여하는 직원이 사용하는 손위생 시설은 자동수전이 권장되나 자동 수전 설비가 어려울 경우 단일 레버 또는 손목 블레이드 장치를 권장하되, 블레이드 핸들길이가 최소 4인치(10,2cm)로 한다.
    - ④ 싱크는 주변으로 물이 튀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깊게 디자인된 것이 좋다.
    - ⑤ 싱크의 재질은 도자기, 스테인레스 등의 견고한 재료로 하며, 싱크에 캐비넷이나 벽 공간으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틈새를 밀봉한다.
    - ⑥ 싱크 아래에 저장 공간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
  - (2) 알코올 손소독제는 입원환자 침대, 처치용 Cart, 외래 진료실 및 검사실에 비치한다.
  - (3) 세면 시설에는 손위생 스티커를 붙인다.
- 6) 손위생 제제[별첨 1]
  - (1) 환자영역에서 사용하는 손위생을 위한 제제는 감염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.
  - (2) 손위생 제제는 환자 진료가 수행되는 지점에서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한다.
  - (3) 손위생 제제 용기에는 사용기간(개봉일·유효일)을 기입한다.



- (4) 손위생 제제의 사용기한과 방법은 제조사의 지침을 따른다.(알코올제제 사용기한은 개봉 후 6개월)
- (5) 액체용품은 오염과 증발을 막기 위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, 용기를 재사용하지 않는다
- (6) 부분적으로 비어있는 손위생 제제 용기에 제제를 보충하지 않는다.
- (7) 손위생 제제는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한다.
- 7) 손위생 증진활동 성과관리
  - (1) 손위생 증진활동 프로그램(손위생 관련 행사, 손위생 수행도 조사, 병동의 손소독제 사용 량 조사, 손위생 포스터 부착 등)을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한다.
  - (2) 손위생 수행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, 수행도 결과를 산출한다.
  - (3) 손위생 수행도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적절한 개선활동을 수행한다.
- 8) 경영진 보고 및 관련 직원 공유
  - (1) 손위생 수행도는 분기마다 감염관리위원회와 병원장에게 보고한다.
  - (2) 손위생 증진활동 성과 결과를 분기마다 각 부서에 공지하고, 원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.
  - (3) 손위생 증진활동의 성과 내용
    - ① 지표선정 및 정의
    - ② 주기적 모니터링 및 지표분석
    - ③ 분석결과를 활용한 지속적 개선활동 수행 및 평가에 대한 성과관리

## V. 참고

- 1.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. 감염관리학. 제2판, 2012
- 2.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. 의료기관의 감염관리. 제4판, 2011
- 3. APIC. APIC text of infection control and epidemiolgy. 2009
- 4. CDC. Guideline for hand hygiene in health care settings. 2002
- 5. WHO. Guidelines on hand hygiene in health care. 2009

#### [별첨]

별첨 1. 원내 사용하는 손위생 제제

입안자	규정관리위원장	
승인책임자	병원장	
서명일		



# [별첨 1] 원내 사용하는 손위생 제제

구분	농도·화학명	상품명	성상·색	용도
	7.5% Povidone iodine	Poviclean (포비크린)	용액, 적색	수술실 : 수술 시 손소독
물과 함께 사용	4% Chlorhexidine gluconate (CHG)	Microshield (마이크로쉴드)	용액, 분홍색	수술실 : 수술 시 손소독
	계면활성제(액체)	핸드크린	젤, 녹색	일반적 손위생
물 없이 사용	62% Ethylalcohol	Handclean-Gel (핸드크린겔)	젤, 무색	병동, 진료실, 검사실 : 일반적 손위생